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수준 하향 조정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1132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수준 하 향 조정	2

I. 제안경위

2024년 6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운영 시 나오는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수준 하향 조정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자가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벌칙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94조제2항제1호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벌칙) ----- ----- ----- --.
1. ~ 4의2. (생략)	1. ~ 4의2. (현행과 같음)
4의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u>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u>	4의3. ----- ----- ----- <u>기록한</u> <u>자</u>
4의4. ~ 11. (생략)	4의4. ~ 11. (현행과 같음)
제94조(과태료) ① (생략)	제9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신설></u> <u>1의2.</u> (생략) 2. ~ 5. (생략) ③ ~ ⑥ (생략)	<u>1의2.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u> <u>1의3.</u> (현행 제1호의2와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39조¹⁾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보존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90조²⁾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재규정을 두고 있음.

1) **법 제39조(자가측정)** ①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3.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법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의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그런데 ‘오염물질 측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는 ‘측정 의무를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에 비하여 그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크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하다는 지적³⁾이 있었음.

이에 개정안은 자가측정을 하였으나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미한 의무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위반의 정도와 제재수준 간의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문 의 처
02)6788-5536

3)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3차 개선과제」, 2023.10., 관계부처 합동

② (개선분야) 생활밀착형 규정 14개, 행정적 의무 위반 15개, 사문화된 규정 10개, 법률단위 검토 7개 규정 개선

① (생활밀착형 규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14개 규정 개선

- 국민신문고 DB분석 등을 통해 발굴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이 직접 부담을 느끼는 규정이면서 범죄 중대성이 낮은 규정